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88
----------	------

발의년월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박성연 의원(1명)
찬성자: 강석주, 고광민,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서상열, 유만희, 유정희,
윤기섭, 윤종복, 이성배,
이종태, 이종환, 이희원,
임춘대, 최민규,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23명)

1. 제안이유

- 여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기관 종사자까지 보복 · 스토킹 등 2차 피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 이에 피해자와 종사자의 신변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법률상담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에 법률상담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14조의3 제7호).
- 나. 제18조의 제목을 “2차 피해 방지”에서 “신변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로 변경함(안 제18조).
- 다. 피해자 및 피해자 보호 · 지원기관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률상담 지원사업

제18조의 제목 “(2차 피해 방지)”를 “(신변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피해자와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의3(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시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의 적정한 보호 및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6. (생 략) <u><신 설></u> <u>7. (생 략)</u></p> <p>제18조(<u>2차 피해 방지</u>) <신 설></p> <p>(생 략)</p>	<p>제14조의3(가정폭력피해자 지원)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u>7. 법률상담 지원사업</u> <u>8. (현행 제7호와 같음)</u></p> <p>제18조(<u>신변보호 및 2차 피해 방지</u>) ① 시장은 피해자와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종사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안전대책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서울시 관련부서(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및 가족담당관)에 유선상 문의하였나 현재 상위지침 등에 따라 일부 안전대책을 마련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대책을 추가확대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또한 안 제14조의3(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의 법률상담 지원사업은 서울시 관련부서(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문의결과 법률상담을 기시행²⁾하고 있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

- 1) [중앙부처 지침 및 실시현황 고려]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p.333 등)에 따르면 시설종사자가 상담 등 업무와 관련 폭행 등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 대책마련 (CCTV설치, 가스총 구비, 경찰관서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상해보험 가입 의무 등)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의 경우 이를 근거로 경찰관서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상해보험 가입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경우 기추진사업으로 판단됨
- 2) [기추진사업] 서울시 여성가족실 여성폭력(가정폭력) 상담관련 주요예산 현황
 - 2025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 3,263,118천원
 - 2025년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운영지원> : 1,452,976천원